

2019년 혁신형사업 지원사업 공모시행 공고(수정)

서울시에서는 (예비)사회적기업,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다양한 혁신적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다음과 같이 「2019년 혁신형사업 지원사업」 희망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19년 3월 4일

서울특별시

1. 총사업비 : 325백만원

※ 서울시혁신형사업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사업, 지원대상별 사업비 조정 및 결정

2. 사업내용 : 혁신형 사업에 대한 공모를 통해 사업비 등 지원

3. 사업분야 및 지원규모

공모분야	세부내용	지원대상	지원규모
사회문제해결 혁신형사업	〈사회문제 해결형 혁신형사업 분야〉 -사회서비스 혁신형사업, 제조업 기반 혁신형사업, 사회적경제· 금융활성화 혁신형사업으로 보육·주거·교육 등 다 양한 사회문제해결 제시 사업	(예비)사회적기업 (준비기업, 컨소시엄) 사회적협동조합(컨소시엄) 사회적경제기업 컨소시엄 (단, 사회적 기업 주도)	사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(컨소시엄 선정사업 최대2억원이내) ※ 총사업비의 10%는 자부담
협동조합 협업 활성화 및 규모화지원 혁신형사업	〈협동조합 협업 활성화 분야〉 -전략모델 발굴, 공동브랜드 개발, 공 동마케팅, 공동시설 구축 등	협동조합연합회·협의회, 협동조합(5개 이상) 컨소시엄	사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※ 총사업비의 10%는 자부담 (단년도 사업)
	〈협동조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분야〉 (규모화지원 혁신형사업) -사회서비스 혁신형사업, 제조업 기반 혁 신형사업, 사회적경제· 금융활성화 혁 신형사업으로 보육·주거·교육 등 다양한 사회문제해결 제시 사업	사회적협동조합	사업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 ※ 총사업비의 10%는 자부담 (단년도 사업)

4. 신청접수 기간 및 방법

- 기 간 : 2019. 3. 4.(월) 09:00 ~ 3. 22.(금), 17:00限
- 방 법 : 방문접수
- 접수처 :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혁신형사업 담당부서(붙임 1)

5. 공모분야별 세부내용

5-1. 2019년 사회문제해결형 혁신형사업

☐ 사업기간 ※ 중간평가기간 제외

- 초기(1차) 사업기간 : 초기사업비 지원 약정체결일 ~ '19.12.31.
 - 추가(2차) 사업기간 : 추가사업비 지원 약정체결일 ~ '20.하반기
- ※ 초기사업비 지원 후 중간평가 실시결과에 따라 추가사업비 계속 지원여부 결정

☐ 공모분야

- 사회서비스, 제조업기반 및 사회적경제·금융활성화 혁신형사업으로
보육·주거·교육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제시 사업(붙임 2)

☐ 지원규모

- 기업별 최대 1억원 이내(권소사업 선정사업 : 최대 2억원 이내)
 - 초기사업비 최대 5천만원 지급, 중간평가 실시 후 추가사업비 최대 5천만원 지급(2회 지급)
- ※ 지원금액 최대 1억원 총액한도 내에서 지급비율 조정가능

★ 사업참여기업은 신청 총사업비의 10% 이상을 자부담
(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)

- 예) 총사업비 1억원인 경우 ⇒ 신청보조금 9천만원, 자부담금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함
(부가가치세 제외-기업부담)
- 자부담 약정액은 1차(초기사업)에 50% 이상 의무사용
 - 사업축소시 등에도 최초 약정 자부담비는 변경 불가

※ 사업비 집행시 혁신형사업비 사용가능 항목 및 불가 항목 참조(붙임 3)

□ 신청자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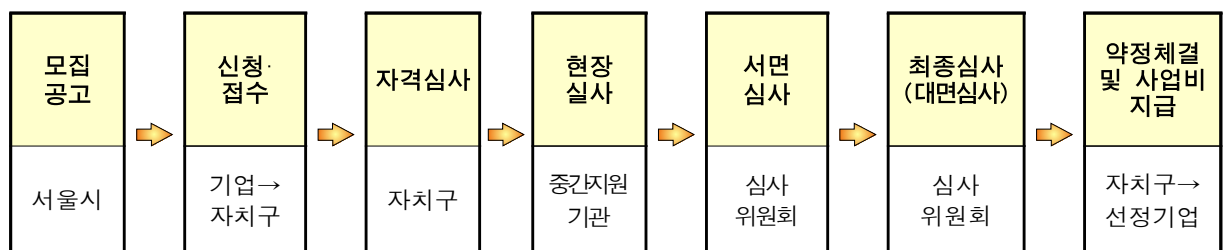
- (예비)사회적기업 및 (예비)사회적기업 컨소시엄
- (예비)사회적기업 준비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 컨소시엄
- 사회적경제조직 컨소시엄(단, 주관기업은 사회적기업이어야 함)
- ※ 모두 서울소재에 한하며 (예비)사회적기업 준비기업은 **‘19년도 초기사업비 지원 약정체결 전까지** (예비)인증사회적기업으로 지정·인증된 기업에 한해 지원금 지급
- ※ 기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후 결격사유가 있을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

신청 제한

- 기존에 동일사업으로 국가 또는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(중복지원 불가)
- (예비)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받은 동일유사 사업 또는 사업개발비 지원받은 동일유사 사업 제외 (2010~2019년 공고일 현재)
- 동일사업으로 2019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에 지원(예정)한 기업
- 사회적 목적이 단순히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업은 제외(⇒ 일자리창출사업 참여)
-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지정 잔여기간이 공고일 기준 1년 미만인 기업
⇒ 단, '19년 4월 30일 이전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지원 가능
- 지방에 주사무소가 있는 기업
⇒ 단, 대표기관을 서울소재 기업으로 하는 컨소시엄의 파트너로 참여는 허용
-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
-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위반으로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기업

□ 심사절차 및 기준

○ 심사절차



※ 현장실사 및 서면심사 사정에 따라 순서가 변경될 수 있음

○ **심사기준 : 세부 심사배점기준(붙임 4)**

- 사업계획(60), 기업역량(40)

1. 동점자 처리기준 : 심사항목 중 우선순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채택

- 우선순위 : 사업계획 > 기업역량

2. 서면심사 결과 서면심사 총점 60% 미만 기업은 탈락, 서면심사 통과기업 대상으로 대면심사 후 최종기업 선정

※ **세부 심사계획은 추후 별도 수립**

□ **심사 세부추진계획**

○ **자격 심사 : ~ '19. 4. 5.(금)限**

- 심사기관 : 신청기업 소재지 자치구 담당부서

- 결격(신청제한) 사유 등 형식적 요건 심사

- 사업내용이 공모사업의 취지와 맞는지 여부 심사

- 부적격 시 미선정(경미한 사항은 보완 요청) 및 사유 통보(전화 또는 이메일)

○ **현장 실사 : ~ '19. 4. 26.(금)限**

- 실사기관 :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

- 실사내용 : 제출자료 검증, 기업현황 및 사업준비도 등 파악

○ **서면 심사 : '19. 5. 3.(금)**

- 심사기관 : 서울시 혁신형사업 서면심사위원회

- 심사대상 : 혁신형사업 신청기업

- 심사내용 : 현장실사 자료를 참조하여 사업계획 및 기업역량 등 세부심사

○ **최종(대면) 심사 : '19. 5. 10.(금)**

- 심사기관 : 서울시 혁신형사업 서면심사위원회

- 심사대상 : 혁신형사업 서면심사 통과기업

- 심사내용 : 신청기업 면접을 통한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

※ **신청기업수 등 내부사정에 따라 추진일정 등 변경될 수 있음**

□ 심사후 일정

- 초기사업비 교부 및 약정체결 : '19. 5월 ~6월 중
- 중간평가 : '20. 3월 중('19년 혁신형사업으로 선정된 기업 대상)
 - 평가내용 : 사업비사용, 경영활동, 경영성과 및 노력도 4개 항목 평가
 - 평가방법 : 현장실사 보고서 참조하여 중간평가 심사위원회 평가
- ※ 등급별 지원금액 등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며, 70점 이하 미지원, 지원금 미지원시 잔여사업은 자부담으로 추진하여야 함
- 추가사업비 교부 : '20. 4월 중
 - ※ 중간평가 결과 추가사업비 교부 확정된 사업에 한해 지원·교부
- 사업평가 및 정산 : '20. 12월 중

□ 제출서류(붙임 서식 참조)

- ① 사업신청서(서식 1) ② 단체현황(소개서)(서식 2)
- ③ 기존 재정지원사업과 동일여부 확인서(서식 3) ④ 사업계획서(서식 4)
- ⑤ 사업비 예산 산출근거 증빙자료(※ 예산운용계획 작성시 견적서 등 정확한 예산산출근거 제시)
- ⑥ 대표자(사업책임자) 인적사항(서식 5)
- ⑦ 재정상태 확인서류('18.12월말 기준)
 - 재무제표(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) ※ 제조업은 제조원가명세서도 반드시 포함
 - ※ 재정상태 확인서류는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(회계사, 세무사 등)의 직인날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
- ⑧ (예비)사회적기업 인증(지정)서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증 등 증빙자료
- ⑨ 개인정보공동이용 동의서(서식 6)

※ 모든 제출서류는 서면 2부 제출(자치구 제출)

⇒ 신청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별도 제출(한글)

⇒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1부 보관, 나머지 1부(심사자료 제작용) 서울시로 송부

※ 선정된 단체는 지원협약 체결 전까지 관련기관의 '이행(지급)보증보험' 상품에 반드시 가입하여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(증권 미제출 시 지원불가)

5-2. 2019년 협동조합 협업활성화 및 규모화지원 분야

☐ 사업기간 : 약정체결일로부터 '19.11.30.(단년도사업)

☐ 공모분야

- 전략모델 발굴, 공동브랜드 개발, 공동마케팅, 공동시설 구축 및 사회 서비스·제조업기반·금융활성화 혁신형사업 등(붙임 2)

☐ 지원규모

-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 분야 : 사업당 최대 1억원
- 협동조합 규모화 분야(협동조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분야) : 사업당 최대 5천만원
- ※ 사업내용을 검토 후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 및 금액 선정

★ **사업참여기업은 신청 총사업비의 10% 이상을 자부담**
(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)

예) 총사업비 1억원인 경우 ⇒ 신청보조금 9천만원, 자부담금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함
(부가가치세 제외-기업부담)

- 자부담 약정액은 1차(초기사업)에 50% 이상 의무사용
- 사업축소시 등에도 최초 약정 자부담비는 변경 불가

※ 사업비 집행시 혁신형사업비 사용가능 항목 및 불가 항목 참조(붙임 3)

※ 사업비 지원 외에 경영지원 컨설팅, 홍보 및 판로지원

☐ 신청자격 : 서울소재 협동조합연합회·협의회, 컨소시엄, 사회적협동조합

※ 기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후 결격사유 있을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

○ 협동조합 연합회

- 기획재정부의 설립신고와 등기로 연합회 법인격이 있을 것
- 신고수리 또는 설립등기가 처리 중인 연합회도 참여가 가능함.
단, 지원 개시일까지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할 시 선정 자동취소

○ 협동조합 협의회

- 5개 이상의 등기 완료된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을 것
- 임의단체로 등록되어 있을 것 ※ **공고기간 마지막 날까지 등록을 요함**

○ 협동조합 컨소시엄

- 5개 이상의 등기 완료된 협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공동사업

※ 협동조합 컨소시엄의 경우 사회적경제조직과 협업가능

(단, 협동조합조직 50% 이상으로 주도 필요)

※ 사업계획에 연합회 및 협의회 설립추진계획 포함할 것

○ 사회적 협동조합

-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되는 협동조합으로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 기관의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

□ 참여(선정) 제외 대상

○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협동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

(지원 중인 단체의 지원은 가능하나 동일한 사업내용은 지원 불가)

○ 법인격을 미취득한 연합회 및 임의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협의회

○ 구체적인 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

○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(토지용도변경, 영업허가 등이 불가한 경우)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

○ 향후 수익창출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

○ 구성원의 합의로 운영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공동체 기능이 취약한 단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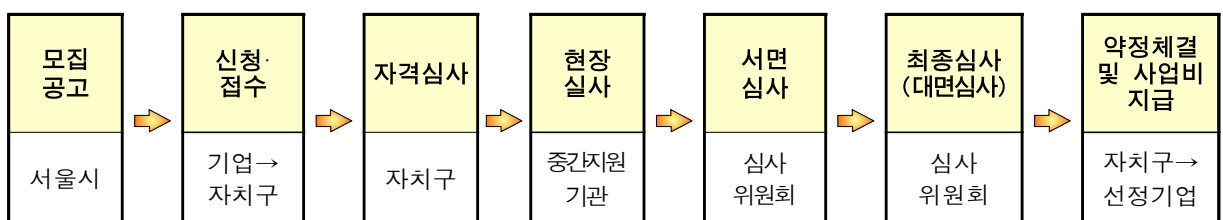
○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

(단, 수익업 관련 업종은 참여 가능)

※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 참조(붙임 5)

□ 심사절차 및 기준

○ 심사절차



※ 현장실사 및 서면심사 사정에 따라 순서가 변경될 수 있음

○ 심사기준 : 세부 심사배점기준(붙임 4)

-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·규모화 분야

▶ 사업계획의 적절성(50), 수행능력(30), 기대 및 파급효과(20)

-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분야

▶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기업 규모화 혁신형사업 심사기준과 동일함

☐ **심사 세부추진 계획**

○ 자격 심사 : ~ '19. 4. 5.(금)限

- 심사기관 : 신청기업 소재지 자치구 담당부서

- 결격(신청제한) 사유 등 형식적 요건 심사

- 사업내용이 공모사업의 취지와 맞는지 여부 심사

- 부적격 시 미선정(경미한 사항은 보완 요청) 및 사유 통보(전화 또는 이메일)

○ 현장 실사 : ~ '19. 4. 26.(금)限

- 실사기관 :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

- 실사내용 : 제출자료 검증, 기업현황 및 사업준비도 등 파악

○ 서면 심사 : '19. 5. 3.(금)

- 심사기관 : 서울시 혁신형사업 서면심사위원회

- 심사대상 : 혁신형사업 신청기업

- 심사내용 : 현장실사 자료를 참조하여 사업계획 및 기업역량 등 세부심사

○ 최종(대면) 심사 : '19. 5.10.(금)

- 심사기관 : 서울시 혁신형사업 서면심사위원회

- 심사대상 : 혁신형사업 서면심사 통과기업

- 심사내용 : 신청기업 면접을 통한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

※ 신청기업수 등 내부사정에 따라 추진일정 등 변경될 수 있음

☐ **심사후 일정**

○ 사업비교부 및 약정체결 : '19.5월~6월 중

○ 사업평가 및 정산 : '19.12월 중

□ 제출서류(붙임 서식 참조)

- ① 사업신청서(서식 7) ② 단체현황(소개서)(서식 8)
- ③ 임원 및 회원 명부(서식 9) ④ 기존 재정지원사업과 동일여부 확인서(서식 3)
- ⑤ 사업계획서(서식 10) ⑥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자료
- ⑦ 조직형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(사본)
 - 협동조합 연합회 : 법인등기부등본(원본), 사업자등록증(사본)
 - 협동조합 협의회 : 임의단체등록증
 - 협동조합 컨소시엄 : 컨소시엄 구성 협동조합 법인등기부등본(원본)
 - 사회적 협동조합 : 설립인가서, 등기부등본
- ⑧ 정관사본(협동조합 연합회의 경우)
- ⑨ 개인정보공동이용 동의서(서식 6)

※ 모든 제출서류는 서면 2부 제출(자치구 제출)

⇒ 신청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별도 제출(한글)

⇒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1부 보관, 나머지 1부(심사자료 제작용) 서울시로 송부

6. 선정결과 발표 : 서울시 홈페이지(www.seoul.go.kr) 및 개별통보

7. 보조금교부 및 사업비 정산 등

- 선정된 단체와 서울시(자치구)가 사업추진약정계약 체결 후 보조금 지급
- 사업추진중 중간평가(현장점검 모니터링, 중간보고) 등 실시

8. 사업계획서 등 작성지침

- 사업계획서는 작성양식에(A4용지 중 방향) 작성 및 한글 워드로 작성
- 사업계획서 등에 표시되는 일체의 자료는 근거 및 출처 명시
-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
- 제출서류의 순서에 따라 제출하되 사업계획서와 관련된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합철하고, 별도 목차를 작성
- 작성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부분에 “해당 없음” 으로 기술

- 기타 법령 및 보조금 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 준수
- 사업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,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공모사업 선정 후에도 취소 됨

9. 유의사항

-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서울시 사회적경제과담당관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,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
- 필요시 제안업체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기존에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
-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,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함
- 지원기간 종료 후 사업비 잔액은 정산 후 반납처리 됨
※ 지원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출행위가 지원기간 이후인 경우에는 지원기간으로 인정함
예) 11월 중 구매 또는 개발사업을 수행하였으나 대금지급이 12월15일 이후인 경우
- 제출서류에 대하여 일체의 허위사실이 없으며,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 및 협약해지 등 제재가 될 수 있음
- 선정된 단체는 지원협약 체결 전까지 관련기관의 '이행(지급)보증보험' 상품에 반드시 가입하여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(증권 미제출 시 지원불가)
-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10. 문의처

-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혁신형사업 담당부서(붙임 1)
-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박미진(☎ 02-2133-5494)